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1월 05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옥, 김혜영, 남창진,
송경택, 윤영희, 이봉준,
이성배, 이숙자, 이은림,
최유희, 최진혁, 황철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7. 18.)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7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p> <p>1. ~ 16. (생략)</p> <p><u><신설></u></p> <p>17. (생략)</p> <p>② (생략)</p> <p>제16조(대관료) ①·② (생략)</p> <p>③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p> <p>④·⑤ (생략)</p>	<p>제9조(무료관람) ① ----- ----- ----- -----.</p> <p>1. ~ 16. (현행과 같음)</p> <p>17.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67조의 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8. (현행 제1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대관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p> <p>④·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무료관람)제1항제17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무료관람)제1항제17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세입이 감소할 수 있음
 - 현행 동 조례 제8조(관람료)제1항제2호1)에 따라 특별전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어 본 개정안 제9조(무료관람)제1항제17호를 변경·신설 시 관람료 수입 순감소가 예상됨
 -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최근 개최한 특별전²⁾ 통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려 하였으나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문의결과 무료관람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단순 추정 시 실제 무료관람객 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추계가 곤란함

구분	종 류	관람료	관련 조례	비고
1	상설전	무료	현행 제8조(관람료)제1항제1호	
2	소장작품 기획전	무료		
3	기획전	현행 무료(심의결과)	현행 제8조(관람료)제1항제2호	
4	특별전	일정금액 관람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1) 제8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2.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2023. 4. 20. ~ 2023. 8. 20. <에드워드 호퍼:길 위에서> 성인 관람료 17,000원(얼리버드 성인 2인 20,000원) 등